

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종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발 의 자 : 임종국, 전병주, 박순규,
권순선, 김 경, 이성배,
오현정, 김경우, 채유미,
박기재, 전석기, 최웅식,
송재혁, 이태성, 권영희,
이호대 의원 (16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개정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제척·회피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 제척·회피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14조제 3항제1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위원의 제척·회피 등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<u>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2.~3. (생략)</p>	<p>제14조(위원의 제척·회피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2.~3. (현행과 같음)</p>